

안양시 환경공무원 관리 규정

제정	2001.	7. 24	규정	제405호
개정	2002.	12. 10	훈령	제423호
개정	2004.	5. 25	훈령	제440호
개정	2008.	7. 18	훈령	제506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515호(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1.	6. 7	훈령	제564호
일부개정	2013.	11. 14	훈령	제605호
일부개정	2014.	11. 24	훈령	제62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4. 15	훈령	제655호
일부개정	2016.	10. 20	훈령	제659호(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0.	6. 4	훈령	제711호
일부개정	2021.	4. 8	훈령	제722호(제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환경공무원의 고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2조(직무의 범위) 환경공무원은 도로변,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등의 청결을 위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지역근무반과 청소기동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4. 8>

1. “지역근무반”이란 동에서 근무하며 도로변,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등을 청소하는 환경공무원을 말한다.
2. “청소기동반”이란 시·구에서 근무하며 행사를 지원하고, 청소 관할구역이 명확치 아니한 곳 또는 긴급히 청소가 필요한 곳을 청소하는 환경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채용 등

제3조(채용) ① 환경공무원은 결원이 있을 때 또는 증원이 필요할 때 채용하되,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4, 2021. 4. 8>

② 신규 채용자는 공무원 임용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4>

③ 정년은 만 61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12월말에 실시한다. <개정 2011. 6. 7>

④ 신규 채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공무관을 채용할 때의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8>

1. 서류심사: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결격 사유 심사
2.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② 채용시험의 시기, 횟수, 인원 등은 임면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기준) 제4조제2호에 따른 환경공무원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1. 4. 8>

1. 국가관 및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조건
3. 안양시 장기 거주자 우선권 부여

제6조(구비서류) 환경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4, 2021. 4. 8>

1. 이력서
2. 신원진술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가족관계등록부
5. 운전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한다)
6. 채용신체검사서

제7조(고용의 해지) 환경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고용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 30, 2016. 4. 15, 2016. 10. 20, 2021. 4. 8>

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
3.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 5.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고를 받았을 때
- 6.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간 무단결근한 때
- 7.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았을 때
- 8. 별표 1의 문책기준에 해당되어 경고 3회 받았을 때

제8조(해고의 예고) 환경공무관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9조(징계심의회) ① 환경공무원의 징계처분 기준이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정한 징계를 위하여 5명 이내로 구성된 징계심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1. 4. 8>

② 징계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14, 2016. 4. 15>

- 1. 위원장: 시 청소업무 담당 국·소장
- 2.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 시 위원 중에서 호선
- 3. 위원: 시 청소업무 담당과장, 구 청소업무 담당과장, 징계처분 대상자 소속 노동조합 지부장

③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있는 환경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4. 8>

[본조신설 2016. 4. 15]

제3장 복무

제10조(준수사항) 환경공무관은 이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11조(근무지지정) 환경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은 시 청소업무 담당 국·소장이, 동 관내 청소구역 지정은 동장이 하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4, 2021. 4. 8>

제12조(책임과 의무) ① 환경공무관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능률적이고 성실하게 일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4. 8>

② 환경공무관은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 및 비품을 관리하고 담당 구역을 깨끗이 청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 4. 8>

③ 청소담당 구역 이외라도 청소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하여야 한다.

④ 환경공무관은 청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 4. 8>

⑤ 환경공무관은 청소 이외에 도로변 휴지통을 깨끗이 관리하고 주민의 쓰레기 배출 계도,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13조(반장의 임무) ① 동장은 환경공무관을 원활히 통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4, 2021. 4. 8>

② 반장은 환경공무관을 지도·감독하며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1. 4. 8>

[제목개정 2020. 6. 4]

제14조(복장의 착용) 환경공무관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15조(근무시간) 환경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요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16조(점호 등) ① 동장은 배치된 환경공무원의 점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② 제1항의 점호 시 안전교육과 지시사항을 시달하고, 관내를 수시 순찰하여 취약지를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병가 및 복직) ① 환경공무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80일까지 병가로 처리하고 그 이후는 사직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병가 시작일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4. 15, 2021. 4. 8>

② 제1항에 따라 사직한 자가 완쾌되어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 채용한다.

제18조(공가) 환경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

요한 기간을 공가 처리한다. <개정 2021. 4. 8>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출장갈 때

제19조(결근신고) 환경공무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서로써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7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20조(휴일) ① 환경공무원의 주휴일은 매주 1회로 한다. <개정 2021. 4. 8>
② 3·1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노조설립일, 성탄절, 현충일은 휴무한다. 다만, 청소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한 휴일에는 06:00부터 10:00까지 근무한다.

제21조(보건휴가) ① 여성 환경공무원에게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준다. <개정 2021. 4. 8>

②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특별휴가) 환경공무원의 정년퇴직 전 특별휴가는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5년 이상은 10일로 한다. <개정 2011. 6. 7, 2021. 4. 8>

제23조(경조사휴가) ① 경조사 휴가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4>

제24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4>

②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4>

③ 최초 1년간 근로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1항에 따른 15일의 유급휴가에서 뺀다. <개정 2013. 11. 14, 2016. 4. 15>

④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때 2년에는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 11. 14>

⑤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무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제외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5조(임금) ① 모든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지급은 매월 19일까지 산정하여 20일에,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4>

②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후생복지 등

제26조(안전대책) ① 환경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근무복 등에 야광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② 시 청소업무 담당과장은 환경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동장은 수시로 배치된 환경공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27조(건강진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환경공무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4, 2021. 4. 8>

제28조(재해보상) ① 환경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6. 4. 15, 2021. 4. 8>

② 제1항 이외의 정상적인 작업과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가기간 60일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1. 14>

제29조(피복류 및 장비) 시 청소업무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매년 환경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1. 4. 8>

1. 하계피복: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우의, 장화
2. 동계피복: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모
3. 장갑, 안전벨트, 그 밖의 청소업무에 필요한 장비

제30조(체육주간행사) 환경공무원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육주간에 체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31조(표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범 환경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2021. 4. 8>

1. 직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근면한 자세로 봉사행정구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청소업무에 능동적인 자세로 직원 및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사람
3. 공·사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2조(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 4. 1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개·폐할 수 있다.

부칙 <2004. 5. 25 훈령 제4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8 훈령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 30 훈령 제515호,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 가로환경미화원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안양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을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1. 6. 7 훈령 제56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14 훈령 제60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24 훈령 제6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5 훈령 제65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0 훈령 제659호, 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 가로환경미화원 취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20. 6. 4 훈령 제71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훈령 제7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로환경미화원의”를 “환경공무원의”로, 「안양시 가로환경미화원 취업 규정」을 「안양시 환경공무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가로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② 안양시 도시브랜드 및 비전브랜드 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응용요소란 중 “환경미화원복, 환경미화원복 조끼”를 “환경공무원복, 환경공무원복 조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1. 4. 8>

환경공무원 문책기준(제7조 관련)

위반내용	문책기준				비고
	주의	경고	감봉	해고	
담당구역 청소 불량	○				
무단조퇴	○				
근무태만	○	주의2회			
장비 관리 소홀	○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			경고3회	
규정복장, 안전복장 미착용	○				
지시사항 위반		○	○		
무단결근		○	○		
근무시간 음주 및 품위손상		○	○		
무단이석(근무지이탈)		○	○		

1. 처분의 종류

- 가. 주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유서를 받고 시 청소 업무담당과장이 문서로 써 훈계한다.
- 나. 경고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유서를 받고 시 청소 업무담당과장이 문서로 써 경고한다.
- 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
- 라. 해고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책기준 누계를 적용하여 처분한다. 다만, 해고처분 결정자에게는 30일간의 유예기간(사전예고)을 부여한 후 해고한다.

2. 적용기준

- 가. 상기 위반내용으로 주의처분 받은 자가 다른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의 없이 경고 처분한다.
- 나. 경고 1회 이상 받은 자는 주의 없이 경고 처분한다.
- 다.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3. 가중처분 기준

- 총 경고처분 횟수 3회 이상: 해고

[별표 2] <개정 2021. 4. 8>

환경공무원 근무시간(제15조 관련)

구분	시간	비고
오전근무	08:00 ~ 12:00	4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	
오후근무	13:00 ~ 17:00	4시간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4시간(06:00~10:00)

[별표 3] <개정 2016. 4. 15>

경조사 휴가(제23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8>

서 약 서

본인은 환경공무원으로 근무지 지정을 받음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환경공무원으로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봉사자로서 정직과 성실로 청소업무에 임한다.
1.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근무 중 음주를 하지 아니하며, 안전을 위하여 최대의 주의를 기울인다.
1. 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환경공무원

(인)

[별지 제2호서식]

결근(조퇴, 병가, 공가)신고서

성명:

청소구역:

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결근(조퇴)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첨부: 진단서 1부 (7일 이상 병가 시)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

